

2015-09 책임연구보고서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의 대응 방안

김 학 신

POLICE
SCIENCE
INSTITUTE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목 차

I. 서론	1
II. 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실태	5
1.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 현황	5
가. 체류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의 정의	5
나. 국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	8
2.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	10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감 추이 실태와 원인	16
III.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와 문제점	22
1. 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	22
가. 체류 외국인 범죄의 정의	22
나. 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23
다. 외국인 범죄자의 죄종별 검거 현황	24
라. 외국인 범죄 국적별 검거 현황	25
2. 체류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26
가. 지문정보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범인 검거의 어려움	26
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차량 범죄 가능성	29
다. 외국인 범죄자 통보 및 입국규제 미비	31
IV.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34
1. 체류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사 경찰의 역할	34

가. 체류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사경찰의 효율적 운용	34
나. 외사경찰의 전문 요원화	35
2.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교육과 경찰의 엄정 대응	37
가. 체류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개선 확립	37
나.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중심의 경찰 치안 강화 전개	39
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43
라.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45
3. 경찰의 전담 검거 강화와 단속 협력 구축	47
가. 외국인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전담 활동 강화	47
나. 체류외국인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 협력 구축	48
4. 맞춤형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51
5. 불법체류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밀입국 방지 대책	53
6. 체류외국인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의 유입 차단	54
7. 실효성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관리	55
8. 불법체류자의 차적 조회를 통한 범죄 예방	57
V. 결 론	59
참고문헌	62

표 목 차

<표 1> 국내 불법 체류자 및 체류률 현황	8
<표 2> 10년간 출입국자 추세 (승무원 포함)	11
<표 3> 총 출입국자 현황(승무원 포함)	12
<표 4> 총 국민 출국자 연령별 현황(승무원 제외)	13
<표 5> 국민 출국자 중 순 출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13
<표 6>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14
<표 7> 외국인 입국자 입국목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15
<표 8>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현황	17
<표 9>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18
<표 10> 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19
<표 11> 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1
<표 12> 10년간 외국인 범죄자 수 현황	23
<표 13> 2010 이후, 외국인 범죄자 죄종별 검거 현황	24
<표 14> 2010 이후, 외국인 범죄자 국적별 검거 현황	26
<표 15> 10지 지문 미등록자 현황	28
<표 16> 외국어 전문 요원 현황	36
<표 17> 등록외국인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41
<표 18> 2015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사범의 단속 결과	42
<표 19> 자동차 등록 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 관련 현황	57

그림 차례

<그림 1> 불법 체류자 현황 (2011-2014)	9
<그림 2> 10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11
<그림 3> 10년간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18
<그림 4> 기초 법질서·제도 교육 (2014)	38
<그림 5> 외국인 밀집지역·치안안전구역	44

I. 서론

정부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¹⁾ 특히,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개방, 대한민국의 고용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통합, 차별방지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여러나라와의 인적, 물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 즉, 우리나라에 입국, 출국,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인원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4년 출입국자가 6,165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²⁾ 2014년 총 출입국자는 2013년보다 12.2% 증가한 6,165만명 중 우리 국민이 3,272만 명이고, 외국인은 2,892만명 이다.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202개국에서 1,426만명으로 2013년 대비하여 입국자 수가 16.9% 증가하고, 방문 국가도 더욱 다양해졌다.

-
- 1) 여기서 외국인 정책이라 함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영주권,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의 인권 보호,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국민의 해외이주 제외)을 의미한다. 특히 주요 정책대상으로는 약 180만 명의 체류 외국인과 약 18만 7천 여명의 국적취득자가 주요 정책대상이다. 체류외국인은 친지방문, 관광,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 유학 등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거주하거나 결혼, 이민, 영주 등 국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국적 취득자는 외국인 중에서 귀화, 국적회복 등의 절차에 의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4쪽.
- 2) 법무부, 2014년 출입국자 6,0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1. 26 참고자료.

2014년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79만명으로 2014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32만명 대비 약 3.5%에 해당하고 있다.³⁾ 이중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137만명으로 2013년 121만명에 비해 13.2% 증가하였다.

특히,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등의 순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체류하고 있다.⁴⁾ 이렇게 증가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한 대도시 일대와 공단지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한다.⁵⁾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생적 범죄조직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⁶⁾ 이러한 부정적 요인은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내지 혐오감(Xenophobia)⁷⁾과 함께 치안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외국인 출입국자가 2,892만 명, 국내 체류외국인이 약 180만 명에 이르자, 이에 대한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체류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⁸⁾ 방화, 강간, 도박,⁹⁾ 마약,¹⁰⁾ 조직폭력

3) 2012년은 145만 명으로 인구대비 약 2.8%, 2013년은 158만명으로 인구대비 약 3.1%, 2014년은 180만 명으로 인구대비 약 3.5%에 해당하고 있다.

4) 법무부, 위의 자료, 참고.

5)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가 1,000여명 이상이고,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20%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으로 전국에 42개의 외국인밀집지역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위의 자료, 41쪽

6) 김윤영,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2, 2쪽.

7) 제노포비아(xenophobia)라 함은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를 합쳐 만든 말이다.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된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경기 침체 속에서 증가한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전가시키거나 특히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35&cid=43667&categoryId=43667>(2015. 10. 28 검색)

8) 경기지방경찰청은 중국인(女) 친구가 주거지에 보관중인 현금을 보고 폭행하여 600만원을 강취한 중국 동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휴가기간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가 되어 소주병 등으로 폭행을 행사한 스리랑카인 피의자 4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2015. 9. 17.

9) 대구지방경찰청은 보안매체(OTP)를 태국으로 유출, 5천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장

등의 흉악 범죄와 여권·화폐 등의 위·변조 범죄, 총기 밀수, 매춘,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잔인하고 지능화, 조직화, 국제화되어 우리 국민들을 두렵고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2012년 4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한 토막살인 사건,¹¹⁾ 2014년 11월 조선족 박춘봉에 의한 수원 살인사건¹²⁾ 등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들이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체류외국인 범죄자는 2011년 33,722명 중 흉악범죄자 696명, 2012년에는 28,120명 중 712명, 2013년에는 30,681명의 체류 외국인 범죄자 중 873명이 흉악범죄자로 매년 체류외국인에 의한 흉악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³⁾

이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이들에 의한 지속적인 범죄 증가를 막고, 체류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을 운영한 국내 총책 등 내국인 피의자 1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2015. 9. 15.
- 10) 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밀수한 GHB(물뽕)을 구입 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매매 및 투약한 중국 동포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2015. 9. 17.
- 11) 오원춘에 의한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2012. 4. 1.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K양을 집으로 납치하여 스페너로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사건이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결국 살해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2. 10. 1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고, 2013. 1. 16.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현재 경북 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일요서울, '수원 토막 살인, 경찰 늦장 대응 논란 속 경찰 사과문 발표', 2012. 4. 6; 나연준, '수원 토막살인 사건, 경찰 탐문 조사 제대로 했어도 참극 막았을 수도...', NEW1, 2012. 4. 6; 이상원, '오원춘, 훼손 시신 일부 타인에 제공하려...', 문화일보, 2012. 6. 15; 김기환, '우위안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12. 10. 19 참조.
- 12)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은 2014. 12. 4. 수원 팔달구 인근의 팔달산에서 비닐봉지에 장기 없는 토막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국과수는 시신이 사춘기가 지난 혈액형 A형 여성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정밀부검 결과를 내렸지만, 피해자의 신원 등 용의자를 추정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박춘봉을 검거하여 구속한 사건이다.
- 13) 국무조정실,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에 외국인 범죄 예방 한다', 2015. 2. 5, 보도자료.

예를 들면 ①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 사전예방하거나,¹⁴⁾ ② 단속의 강화 및 자진출국 적극 유도, ③ 우범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④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경찰도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체류외국인 범죄를 제압하고 범질서를 확립하며, 더불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⁵⁾

이외에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범죄수사대 등 경찰의 연중 순찰강화, 강력한 법집행, 맞춤형 홍보활동과 불법체류자에 의한 밀입국방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대응시스템의 재정립, 체류외국인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의 유입 차단, 유관기관 간의 단속협력의 구축,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 CCTV 확대 설치를 통한 우범 외국인 관리, CPTED를 활용한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짧은 단편과제로 체류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정부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4)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여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차단한다.

15)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반」은 경찰청 50명, 법무부 140명, 고용부 50명, 국민안전처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단속결과 불법체류자 4,751명, 불법고용주 1,148명으로 총 5,899명을 검거하고, 국적별로는 태국(40.3%), 중국(23.4%), 베트남(11%)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38.4%), 유흥업(9.1%), 건설업(7.2%) 순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 내부자료, 2015. 11. 20.

II. 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 현황

가. 체류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의 정의

우리 「헌법」 제2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¹⁶⁾ 특히,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둘째,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셋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넷째,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나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용어로 외국인이라고 말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개념은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경우 외국인은 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

16) 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3헌바424, 2015. 5. 28) 참조.

하며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서 무국적자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사인(私人)만을 의미한다. 즉, 공적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 예컨대 국가원수, 외국사절 및 군대의 구성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나, 무국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¹⁷⁾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서 재한외국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즉,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¹⁸⁾ 또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는데, 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을 불법체류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라고도 정의하고 있다.¹⁹⁾

출입국관리 실무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여 무단으로 체류하는 경우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²⁰⁾

17) 김윤영, 앞의 논문, 14쪽.

18)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9) 김윤영,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6쪽.

20) 김창식, ‘불법체류외국인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불법체류자 처리대책 Workshop 자료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란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나,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²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주민에 의한 범죄는 헌법과 판례상 외국인 범죄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한반도 전체' 즉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법에 따라 북한국적을 가진 여성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조선족 남자와 결혼한 다음 중국여권에 30일짜리 방문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식당과 여관 등지를 돌며 불법으로 체류하게 됐고, 그러던 중 남자는 폭행사건으로 사망까지 하게 됐다. 홀로된 여성은 강원도 화천에 사는 친척을 알게되어 그들과 함께 여생을 마감하기로 하기로 하고, 몇 달 후 경찰서에 찾아가 귀순의 의사를 표하였지만, 경찰관서 및 출입국관서에서는 위 여성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고 강제퇴거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해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집, 2013 6. 17쪽; 김운영, 위의 논문, 6쪽 재인용.

21) 예를 들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체류하는 미군, 군속 및 그 가족들에 의한 범죄, 중국국적의 조선족,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에 의한 범죄는 모두 외국인 범죄이다.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3, 4쪽.

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하였다.²²⁾ 이에 맞추어 국회에서도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나. 국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불법체류자 현황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총 체류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와 비례하여 불법체류자들도 2009년 177,955명에서 2010년 13.4%, 2011년 12.0%, 2012년 12.3%, 2013년 11.6%, 2014년 208,778명으로 11.6%의 체류률이 10%대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불법체류자가 212,596명으로 2015년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12.1%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내 불법 체류자 및 체류률 현황

(단위:명, 2015. 8.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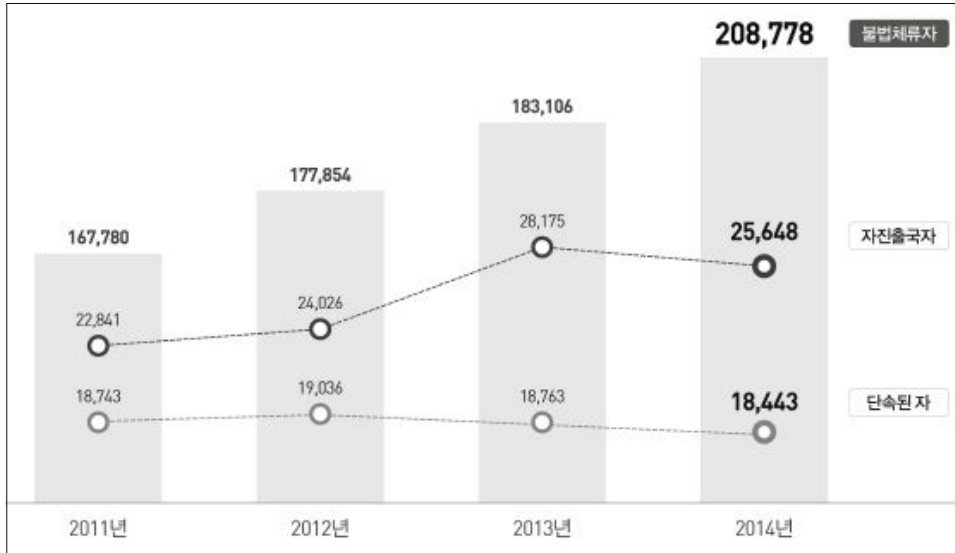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8. 기준
총체류 외국인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22,781
불 법 체류자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2,596
불 법 체류율	15.2%	13.4%	12.0%	12.3%	11.6%	11.6%	12.1%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8. 31, 기준.

22)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 1221 판결.

<그림 1> 불법 체류자 현황 (2011-2014)

(단위 : 명)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2015.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증가 실태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각 부처별로 구현하고 있다.

즉, 경찰청을 비롯하여 법무부, 고용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들의 정부합동단속반 등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자 등 2014년 기준, 18,443명의 범법 외국인을 적발하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6천여명을 단속하고,²³⁾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자 및 허위초청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723건(4,323명)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류 외국인의 증

23) 2014년 외국인 불법고용주 처벌 건수는 6,943건이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고자 고발대상 외국인 불법고용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불법고용주 고발기준인 ‘불법고용 외국인수를 기준 11인에서 7인’으로 하고,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은 횟수를 최근 3년내 3회에서 5년내 3회’로 하고, 불법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법무부 훈령 제963호, 2014. 8. 27 개정.

가와 체류 만료 외국인의 출국 기피, 단속인원의 부족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밀집지역내의 주민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영등포구, 안산 원곡동 등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내에서 기초질서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 발생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경제활동 상황, 정착실태, 사회기여도, 애로 사항 등 이민정책 수립에 활용할 유용한 통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²⁴⁾

2.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

최근의 국내 출입국자수는 2009년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이다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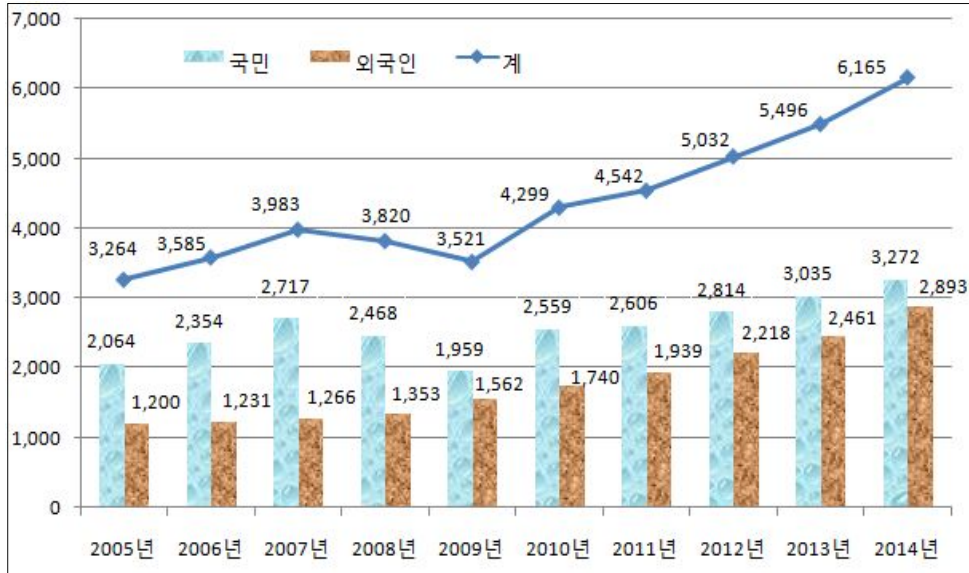
특히, 2014년 국내에 입국하거나 해외로 나간 내·외국인이 6165만 2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6,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출입국자 현황을 집계한 이래 최대치로 2005년 출입국자 3,000만 명 시대를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배인 6,000만 명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출입국자는 2013년 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 2015 중앙행정기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26쪽.

<그림 2> 10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단위 : 명)



<표 2> 10년간 출입국자 추세 (승무원 포함)

(단위 : 명)

연도	국 민	외국인	계	증감율(%)
'05년	20,638,159	11,999,876	32,638,035	↑ 10.2%
'06년	23,538,250	12,312,871	35,851,121	↑ 9.8%
'07년	27,174,375	12,659,349	39,833,724	↑ 11.1%
'08년	24,677,484	13,526,136	38,203,620	↓ 4.1%
'09년	19,586,995	15,619,509	35,206,504	↓ 7.9%
'10년	25,585,627	17,402,474	42,988,101	↑ 22.1%
'11년	26,064,463	19,358,447	45,422,910	↑ 5.7%
'12년	28,136,623	22,185,474	50,322,097	↑ 10.8%
'13년	30,349,466	24,613,821	54,963,287	↑ 9.2%
'14년	32,722,368	28,929,790	61,652,158	↑ 12.2%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또한 국민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외국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우리 국민이 32,722,368 명이고, 외국인은 28,929,790명이다.²⁵⁾

<표 3> 총 출입국자 현황(승무원 포함)

(2014년,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3년		
	계	국민	외국인	계	국민	외국인
계	61,652,158	32,722,368	28,929,790	54,963,287	30,349,466	24,613,821
입 국	30,614,046	16,349,538	14,264,508	27,396,542	15,196,125	12,200,417
출 국	31,038,112	16,372,830	14,665,282	27,566,745	15,153,341	12,413,404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이중 외국인 입국자는 202개 국가에서 14,264,508명으로 2013년 188개 국가 12,200,417명에 비하여 입국자 수가 16.9% 증가하고, 방문 국가도 더욱 다양해졌다. 여기에서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12,682,019명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00만 명(18.8%)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566만 명(44.7%), 일본 225만 명(17.8%), 미국 80만 명(6.3%), 타이완 67만 명(5.3%) 순이다.

25) 법무부, 2014년 출입국자 6,0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1. 26 참고자료.

<표 4> 총 국민 출국자 연령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4년, 단위 : 명)

연령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15,018,234	732,284	983,265	2,513,209	3,421,642	3,149,174	2,715,476	1,503,184
비율	100%	4.9%	6.5%	16.7%	22.8%	21.0%	18.1%	10.0%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국민출국자의 경우는 16,372,830명 중 승무원을 제외한 출국자는 15,018,234명으로 2013년에 비해 8.6%로 118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342만 명), 40대(315만 명), 50대(271만 명) 순으로, 30~50대가 전체의 61.8%를 차지하였다. 2013년도에 비해 30대가 8.4%(26만 명), 40대가 7.7%(22만 명), 50대가 8.9%(22만 명) 증가하였다.

<표 5> 국민 출국자 중 순 출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2014년, 단위 : 명)

연령별	계	0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9,086,840	521,346	746,579	1,572,705	1,944,777	1,673,399	1,573,391	1,054,655
비율	100%	5.7%	8.2%	17.3%	21.4%	18.4%	17.3%	11.6%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국민 순출국자의 경우²⁶⁾는 2014년에 9,086,840명으로 2013년의 8,446,110명과 비교하여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194만 명), 40대(167만 명), 50대(157만 명), 20대(157만 명) 순으로 20~50대가 전체의 74.4%를 차지하였다.

26) 여기에서 순 출국자라 함은 출국 횟수가 아닌 출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이 1년간 10회 출국하였다더라도 순 출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10회 출국 하였더라도 순출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한다. 승무원을 제외한 국민출국자 15,018,234명 중 생애 처음으로 출국한 국민은 1,281,180명(8.5%)이며, 5회 이상 출국한 국민은 1,092,878명(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4년,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타이완	홍콩	기타	
2014년	입국자	12,682,019	5,663,482	2,254,307	798,858	666,805	550,268	2,748,299
	비율 (증감)	100% (↑18.8%)	44.7% (↑44.4%)	17.8% (↓17.0%)	6.3% (↑7.5%)	5.3% (↑17.8%)	4.3% (↑40.6%)	21.7% (↑17.5%)
2013년	입국자	10,678,334	3,923,190	2,715,451	743,017	566,200	391,340	2,339,136
	비율	100%	36.7%	25.4%	7.0%	5.3%	3.7%	21.9%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12,682,019명으로 2013년에 비해 18.8%(200만 명)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566만 명(44.7%), 일본 225만 명(17.8%), 미국 80만 명(6.3%), 타이완 67만 명(5.3%) 순이며, 2013년과 비교하여 중국(174만 명)과 홍콩(16만 명)은 증가한 반면, 일본은 46만 명이 감소하였다.

입국목적별로는 관광·방문이 1,048만 명(82.7%)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51만 명(4.0%), 재외동포 방문 35만 명(2.8%)순으로 나타났다.²⁷⁾

27) (승무원 제외)

〈표 7〉 외국인 입국자 입국목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4년, 단위 : 명)

구 분	계	관광 및 방문	취 업	재외동포	유학	국민의 배우자	기 타
인 원	12,682,019	10,486,992	511,319	349,137	117,836	98,364	1,118,371
비 율	100%	82.7%	4.0%	2.8%	0.9%	0.8%	8.8%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1. 26.

관광유형별로는 단체관광(198만 명), 크루즈관광(69만 명), 제주도무비자(65만 명) 등이 많았으며, 특히 크루즈관광은 2013년에 비해 41.3%(20만 명) 증가하였다.

중국인 입국자가 2014년에는 5,663,482만 명으로 2013년도에 비해 무려 174만 명(4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354만 명(62.5%), 연령대별로는 20~30대 267만 명(47.1%), 입국유형별로는 단체관광이 198만 명(34.9%)으로 각각 수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의 순입국자는²⁸⁾ 2014년에 10,188,483명으로 2013년의 8,238,953명에 비해 197만 명(23.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479만 명, 일본 151만 명, 미국 56만 명, 타이완 55만 명, 홍콩 48만 명 순이다.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10회 입국 하였다 라도 순입국자로 집계할 때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인 총 6,124,311명으로 파악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353만 명, 일본 41만 명, 타이완 34만 명, 미국 23만 명, 홍콩 21만 명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47만 명, 30대

28) 순입국자는 입국 횟수가 아닌 입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를 말한다.

131만 명, 40대 98만 명 순이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자가 38,589,670명으로 69.8%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공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3,859만 명), 김해공항(516만 명), 김포공항(406만 명), 제주공항(310만 명), 부산항(132만 명), 인천항(117만 명) 순이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등은 출입국자가 증가한데 반해, 부산항은 14만 명(9.5%)이 감소하였다.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감 추이 실태와 원인

2014년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80만명에 육박하였다. 이는 2013년 1,576,034명 대비 14.1%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는 2013년 동기 1,576,034명 대비 14.06% 증가한 것으로,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93,619명)가 전년대비 95.5%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8. 31일 기준으로 드디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22,781명으로 180만명을 넘어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8>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현황

(단위:명, 2015. 8. 31. 기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8. 기준
인 원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22,781
증감률	-	▲ 8.0%	▲ 10.6%	▲ 3.6%	▲ 9.1%	▲ 14.1%	-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8. 31, 기준.

이들 체류 외국인들의 구성이 과거 방문취업자 등 근로 목적 체류에서 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투자자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체류외국인은 179만명 중 국내에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하는 외국인은 1,377,945명으로 2013년 1,219,192명에 비해 13.2% 증가하였다.²⁹⁾

또한 201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인구인 51,327,916명 대비 약 3.5%에 해당하고 있다. 2013년은 158만명으로 인구대비 약 3.1%, 2012년은 145만명으로 인구대비 약 2.8%에 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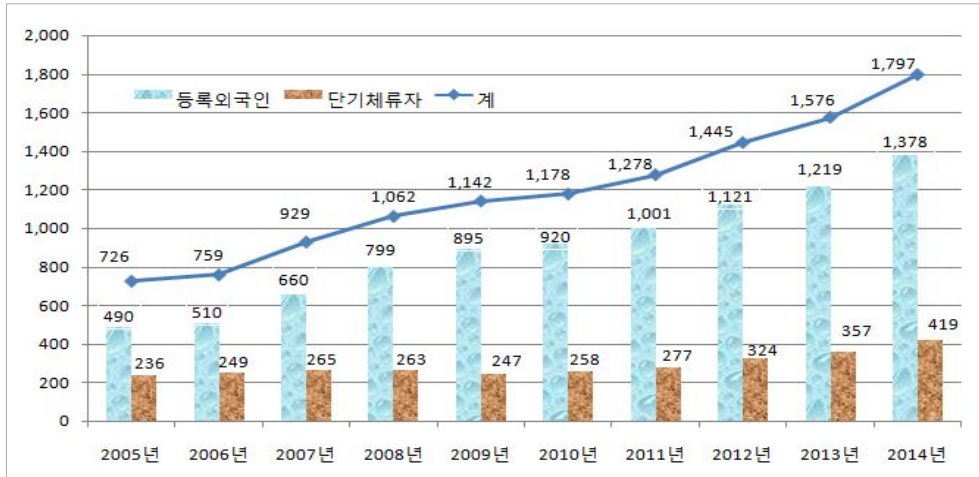
체류한 외국인의 자격별로 구별하면, 취업자격이 617,145명으로 그중 전문분야가 49,503명, 단순분야가 567,642명이며, 제외동포가 289,427명, 결혼이민 150,994명, 유학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86,41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는 208,778명으로 체류외국인 대비 약 11.6%를 차지하고 있다.³⁰⁾

29) 법무부, 2014년 출입국자 6,0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1. 26 참고자료.

30) 1994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난민을 신청한 건수는 9,539건으로 이중 6,431건을 심사로 결정하여 471명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었으며, 716명이 인도적 체류로 결정되어 총 1,187명에게 국내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9쪽.

<그림 3> 10년간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단위 : 명)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표 9>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4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국	미국	베트남	타이	필리핀	일본	기타
인원	1,797,618	898,654	136,663	129,973	94,314	53,538	49,152	435,324
구성비	100%	50.0%	7.6%	7.2%	5.2%	3.0%	2.7%	24.2%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8. 31, 기준.

특히,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 898,654명(50.0%), 미국 136,663명(7.6%), 베트남 129,973명(7.2%), 타이, 94,314명(5.2%), 필리핀 53,538명(3.0%), 일본 49,152명(2.7%)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769,838명으로 약 55.9%를 차지하고, 여자가 608,107명으로 약 44.1%를 차지하여 남자가 더 많이 체류하고 있다.³¹⁾

참고적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903,451명(65.6%), 영남권 241,278(17.5%), 충청권 122,631명(8.9%) 순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기간별로는 40%에 해당하는 547,914명이 1년 이하로 체류하고 있고, 1년 이상 3년 이하가 405,261명(29.4%)으로, 약 70%의 외국인이 3년 이하로 체류하고 있다.

체류목적별로는 재외동포 289,427명(16.1%), 취업자격 553,239명(30.8%)로 그중 방문취업이 282,670명(15.7%) 그리고 비전문취업이 270,569명(15.1%), 단기방문은 146,357명(8.1%), 결혼이민자 120,710명(6.3%) 순이다.³²⁾

<표 10> 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14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체류 자격별	계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비전문 취업 (E-9)	단기방문 (C-3)	결혼이민 (F-6)	영 주 (F-5)	기 타
인 원	1,797,618	289,427	282,670	270,569	146,357	120,710	112,742	575,143
구성비	100%	16.1%	15.7%	15.1%	8.1%	6.7%	6.3%	32.0%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정부의 세계화와 개방정책, 예를 들면 재외동포자격 및 영주자격 부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중국 동포의 유입,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연수 등 현장 노동인력 부족으로

31) 법무부, 앞의 자료, 참고.

32) 취업자격 체류자 중 단순노무 인력이 503,135명으로 81.5% 차지하고 있다.

인한 임금이 비교적 싼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입국하기 때문이었다.³³⁾

또한 국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관광,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는 외사 치안수요의 증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류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외국 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2.7% 증가한 289,42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16.1%를 차지하였다.³⁴⁾

특히, 중국동포가 전년 동기(159,324명) 대비 30.7% 증가한 208,312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재외동포의 제조업 장기근속자, 만 60세 이상 동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전문학사학위소지자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208,312명(72%), 미국 46,165(15.9%), 캐나다 14,509명(5%), 호주 4,267명(1.5%) 순이다.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인 1,377,9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52,793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22,571명 (8.9%), 미국 70,783명(5.1%), 필리핀 43,155명(3.1%), 인도네시아 38,834명(2.8%) 순으로 많았다.

33) 경찰청, 2014 경찰백서, 경찰청, 2014. 10, 306-308쪽.

34)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음.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음.

거주지역별로는 경기 452,387명(32.8%), 서울 382,387명(27.8%), 경남 85,611명(6.2%), 인천 68,677명(5.0%) 순으로 수도권에 약 7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150,9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0,663명(40.2%), 베트남 39,725명(26.3%), 일본 12,603명(8.3%), 필리핀 11,052명(7.3%)명 순이며, 여성이 128,193명(85%)으로 남성 22,801명(15%)보다 5.6배 많았다.

또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초 10만2117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1960년 통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표 11> 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5년 9월말 현재, 단위:명)

	2000년	2003년	2007년	2010년	2015. 9
중 국	1,714	5,590	31,384	66,635	61,940
베트남	85	413	2,281	3,033	6,953
몽 골	83	226	1,193	4,405	4,358
일 본	574	872	1,034	1,745	2,658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국적별 유학생들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으로 6만194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유학생중 60%가 넘는 정도로 10명 중 6명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압도적인 숫자이다. 다음으로 베트남 6,953명, 몽골 4,358명, 일본 2,658명, 미국은 1,524명 순이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범죄와 불법체류 증가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³⁵⁾

Ⅲ.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와 문제점

1. 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

가. 체류 외국인 범죄의 정의

외국인 범죄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의 범법행위를 말한다.³⁶⁾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³⁷⁾ 그러나 형법 제5조는 내란 및 외환죄 등의 경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영토에서 범한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³⁸⁾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국내체류 미군·군속·가족들이 범한 범죄도 외국인 범죄에 해당된다. 중국국적의 동포(조선족), 미국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 등에 의한 범죄도 외국인 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북한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주민에 의한 범죄는 외국인 범죄로 보지 않는다.³⁹⁾

35) 양대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돌파, 헤럴드경제, 2015. 10. 26일자.

36) 외국인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나,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다. 김윤영,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16쪽 재인용.

37) ‘국제성 범죄’는 2개 이상 국가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범죄(마약밀수 등)를, ‘외사사범’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여권·출입국·외국환사범 등)를 의미한다. 김윤영, 위의 논문, 16쪽 재인용.

38)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287면; 김윤영, 위의 논문, 16쪽 재인용.

39)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7쪽.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범죄란 국내체류 등록외국인⁴⁰⁾ 또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를 의미한다.

나. 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

2014년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7,899명으로 2013년 34,460명 대비 10.0%가 증가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과 추행, 상해와 폭행 등의 강력사범이 9,31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4년 3,104명 대비 3배나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은 8,147명을 이 또한 2004년 2,897명에서 2010년 5,659명, 2012년 6,25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있다.

<표 12> 10년간 외국인 범죄자 수 현황

(단위 : 명)

	강력사범 ⁴¹⁾	교통사범	사기	기타	합계
2004년	3,104	2,897	596	6,224	12,821
2010년	7,256	5,659	3,136	17,535	33,586
2012년	8,967	6,257	2,359	14,781	32,364
2014년	9,312	8,147	3,097	14,781	37,899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 자료, 2015.

사기범죄의 경우는 3,097명으로 2004년 596명에서 2010년 3,136명으로 약 5배이상 증가하였고, 이후 2014년에는 3,097명으로 소폭 감소

40) '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oyer'로 사용되고 있다.

41) 여기에서 강력사범은 살인, 강도, 강간과 추행, 상해와 폭행을 말한다.

하는 추세이다.⁴²⁾ 2004년 이후 전체적으로 외국인 범죄자 수는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국인 범죄자의 최종별 검거 현황

외국인 범죄자 최종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에는 지속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30,684명으로 3만을 넘어섰고, 강간, 폭력, 마약류 범죄, 지능범죄,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 등 고르게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의자의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 2010 이후, 외국인 범죄자 최종별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죄	도박	교통사범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985	6,946	892	21,651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984	25,931
'12년	24,379	87	188	355	1,682	8,408	233	3,187	1,000	4,807	4,432	807	23,572
'13년	26,663	77	139	503	1,905	8,722	223	3,353	809	5,965	4,967	870	25,793
'14년	30,684	78	87	535	1,918	9,013	349	4,045	791	7,175	6,693	1,013	29,671
'14.9	21,980	62	64	390	1,409	6,583	219	2,899	559	5,101	4,694	722	21,258
'15.9	28,114	64	110	441	1,806	7,475	303	4,039	771	7,113	5,992	1,308	26,806
전년대비(%)	27.9	3.2	71.9	13.1	28.2	13.6	38.4	39.3	37.9	39.4	27.7	81.2	26.1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2015).

4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9쪽

특히, 2015년 9월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살인, 강도, 마약류, 지능, 도박, 교통사범, 강간 등의 범죄자들이 많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강도의 경우에는 110명을 검거하여 2014년 64명 대비 70%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범죄로 지목된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을 정비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 서울을 비롯하여 외국인 범죄 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경찰청에 국제성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하여 수사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여권의 위조·변조 등을 통한 불법출입국 및 불법외환거래와 같은 주요 국제성 범죄 대상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⁴³⁾

라. 외국인 범죄 국적별 검거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 국적별로 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류 외국인 범죄 인원인 30,684명 중에서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피의자가 17,8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이 1,943명, 미국이 1,916명, 태국이 1,362명 순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들 국가가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태국의 급부상인데, 2013년 656명의 범죄자가 검거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2배 이상인 1,362명이 검거되었고,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도 2014년 1,362명이 넘는 1,370명이 검거되어 2013년 이후 급속하게 태국인 범죄자가 검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3)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10. 309면.

〈표 14〉 2010 이후, 외국인 범죄자 국적별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명)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기타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년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27	2,059	5,222
'13년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14년	30,684	17,870	1,916	208	387	461	1,362	243	1,943	6,294
'14년 9	21,980	12,742	1,406	142	291	351	817	192	1,412	4,627
'15년 9	28,114	16,861	1,383	193	338	390	1,370	213	1,681	5,685
전년대비(%)	27.9	32.3	-1.6	35.9	16.2	11.1	67.7	10.9	19.1	22.9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2015).

그리고 근로자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를 한다던가, 이러한 불법 체류로 인한 새로운 범죄의 발생 등 이에 대한 경찰의 각별한 정보, 첩보 등의 수집과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체류 외국인 범죄의 문제점

가. 지문정보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범인 검거의 어려움

감사원은 2015년 4월부터 법무부와 19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180만명이나 되는

체류외국인의 관리와 20여만명의 불법체류자 관리의 한 결과,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6만9295명의 지문 정보가 없고,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채 체류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⁴⁴⁾

2015년 9월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제 31조, 제38조 등의 규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시 지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2003. 12. 31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10. 5. 14 「출입국관리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도입된 제도로 「출입국관리법」제12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양손 집게손가락의 지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등록된 지문은 범죄자 검거, 여권 위조자 색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원불명자 확인⁴⁵⁾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각종 허가시 지문등록을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체류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등록받아야 한다.

또한 2010. 5. 14 「출입국관리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개정 규정에 따라 지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사람은 외국인 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44)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9 자료 참조.

45) 2015년 4월 발생한 시화호 사건(중국동포 A가 아내를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하여 시화호 등에 유기한 사건)의 경우 채취된 피살자 지문을 외국인 지문정보와 비교하여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살자의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검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위 '신분세탁' 불법 출입국 사범 6,874명을 적발하는 등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위조 여권자 등을 다수 적발하였다.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9, 13-14쪽.

의 신청을 할 때에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1,091,531명 중 6.3%에 해당하는 외국인 6만9295명의 10지 지문에 대해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문등록제도가 재도입되어 시행된 2011. 7. 1 이후에는 신규로 외국인등록을 받을 때에는 지문등록을 받아야 하는데도 대리접수나 방문접수 시 지문등록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8,423명의 지문정보를 등록받지 않았다.⁴⁶⁾

<표 15> 10지 지문 미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현재 체류 자격	
		합법체류	불법체류
지문등록제도 폐지기간 중 외국인 등록자	60,872	17,735	43,137
지문등록제도 폐지기간 중 외국인 등록자	8,423	7,914	509
합 계	69,295	25,649	43,646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제출자료, 2015. 5. 29 기준.

즉,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죄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또 2015년 1월 29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46) 외국인등록시 지문등록을 받는 것은 「출입국관리법」본문에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 외국인 등록자 중 지문미등록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 지문등록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출입국관리법」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담당자들이 지문등록을 누락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외국인 등록을 대리접수하거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방문접수하면서 실수로 지문등록을 누락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제출하면서 신규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시 지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8조 제1호 나목에 신설하고, 기존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의 동포들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 할 때에는 지문등록을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67.5%에 해당하는 20만216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문을 제공받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⁴⁷⁾

이처럼 외국인 지문 정보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범죄자 검거, 여권 위조자 색출,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불명자 확인 등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다.

차후 체류외국인의 지문등록에 관해서는 누락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지문정보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15년 8월 경찰청과 법무부는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부터 이어진 단기체류 외국인 지문정보의 공유에 관한 합의를 비롯하여 ‘외국인 지문 확인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등 경찰청과 법무부간의 효율적인 시스템 연계방안은 연내에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⁴⁸⁾

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차량 범죄 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제17조 1항 및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나, 동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사 등의 협조

47)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9. 17쪽.

48) 경찰청, 내부자료, 2015. 8 참조.

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호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책임보험 가입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⁴⁹⁾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정보(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소지 등)⁵⁰⁾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불법체류자의 차량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법체류자 단속 등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시로 거소를 이동하는 자로서 이들을 단속하고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의 회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단속을 우려한 도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의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여 이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중 책임보험 미가입 등 불법행위가 있는 차량들은 자동차 등록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해당 차량을 단속, 적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들을 검거하는 등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여 차량을 이용한 범죄 뿐 아니라 이들에 의한 범죄 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49) 경찰청에서 「도난·범죄차량 공조수사 지침(경찰청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타 차량'으로 차량을 수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 법무부에서 2009년 11월부터 외국인등록정보를 (구)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 등록관청(시·도)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외국인 범죄자 통보 및 입국규제 미비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청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 명단을 통보 받아 조사한 후 동법 제11조와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조치 등을 함에 있어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⁵¹⁾」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은 5년 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마약범죄, 성폭력 범죄 사범의 경우에는 영구히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위의 지침 III. 3. 「입국금지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출입국관리소장 등은 ①용의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강제퇴거 및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②국내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출국 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적발시⁵²⁾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⁵³⁾

51) 이는 2014년 7월, 법무부 지침을 말한다.

52) 중점관리자 등재 등의 조치 없이 참고사항만으로 입력 및 관리한 사례로 A씨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사실을 2014. 7. 11. 통보 받은 후 출석요구나 중점관리자로 등재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입력, 관리한 결과 강제퇴거 및 영구입국 금지대상인 A씨는 범죄사실을 통보일 이후인 2014. 9. 26.부터 2015. 3. 9. 사이에 5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제한 없이 출입국하였다. 이외에도 B씨의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을 2014년 11. 29. 통보받은 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석요구나 중점관리자로 등재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입력, 관리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시 지적되자 2015. 6.2. 출석요구한 후 2015. 6. 9일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9. 37쪽.

53) 감사원, 위의 감사보고서, 34쪽.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형사범에 대한 검찰처분 및 재판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처리하던 것을 2013년 5월 검찰청 등과 협의하여 출입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감사원의 감사에 의하면, 외국인 형사범 통보자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한 후 접수·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를 할 때는 통보받은 일자별로 조회 할 수 없고, 처분일자만으로 조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누락되는 등 외국인 형사범 통보자 입국규제 업무 처리 문제와 그로 인한 입국규제가 미비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유예자⁵⁴⁾에 대하여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적정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점검 결과, 외국인 형사범 통보자 43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외국인 형사범을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없이 그대로 둔 사례로 A씨의 경우는 집단·흉기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을 2013. 5. 29 통보받은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석요구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금지 대상인 위 사람은 형사범 통보일 이후인 2014. 1. 15부터 동년 11. 30일 사이에 8회에 걸쳐 제한없이 국내에 출입국하였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체류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B씨의 경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을 2013. 3. 6 통보

54) 외국인 형사범이 구속상태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교도소 등으로부터 직접 신병을 인계받아 강제퇴거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신병이 인계되지 않으므로 최근 2년간 통보받은 집행유예자 2,304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은 점검하였다. 감사원, 위의 보고서, 35쪽.

받은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석요구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금지 대상인 위 사람은 범죄사실 통보일 이후인 2013. 5. 31.부터 2014. 8. 24. 사이에 인천공항을 통해 4회에 걸쳐 제한없이 국내에 출입국하였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체류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을 받았다. 또한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300만원 선고 받는 등의 범죄행위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집행유예자들의 외국인 범죄자 통보미비 그리고 이로 인한 출입국 규제의 미비는 결국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퇴거 및 5년간 입국금지 대상인 경우에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보와 함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IV.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1. 체류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사 경찰의 역할

가. 체류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외사경찰의 효율적 운용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범죄의 대응을 위해서 외사경찰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사경찰의 정원은 2014년 9월 기준, 1,102명으로 전체 경찰의 약 1%에 해당하는 정예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외사 경찰조직을 살펴보면, 경찰청에는 외사국을 두고 하위에 외사기획·외사정보·외사수사 3개과를 운용하며, 외사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청에는 외사과 직제를, 기타 지방청에는 보안과 하위에 외사계 직제를 운영 중이다.⁵⁵⁾ 특히, 외국인밀집지역과 치안안전구역 등에서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예방과 외국인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외사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13년말 기준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지방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운영 중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5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의 형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영등포 대림, 구로 가리봉, 용산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사수사 인력 259명(국제범죄수사대 17개팀 89명과 7개 경찰서 170명)을 투입하여 합동 순찰 및 검문 검색을 실시하여 도박 및 불법체류자

55)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10, 324쪽

등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 중심으로 외사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 현장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외국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때 외국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외사경찰의 전문 요원화

국제사회가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18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강력화, 흉포화, 조직화, 국제화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수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정세 및 외사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수사 공조와 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및 수사기법 등 지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실력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즉, 각국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범죄수사요원’ 들에 대한 교육 운영은 당연한 요청이 되고 있다.⁵⁶⁾

56) 이를 위해 경찰교육원에서는 외사요원의 기본 실무지식 습득, 외사 정보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외사요원 양성과정」, 「외사정보 전문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산업정보의 전반적 이해와 변화하는 산업보안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을 비롯하여 국제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범죄 수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10, 325쪽.

〈표 16〉 외국인 전문 요원 현황

(단위 : 명)

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태국어	일본어	아랍어	몽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독일어	버마어	싱가포르어	힌디어	네팔어	크메르어	우즈베크어	페르시아어
216	54	30	20	15	15	13	10	12	12	9	6	2	3	4	2	1	2	1	2	1	1	1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체류외국인 범죄를 비롯한 민원 등 외국인 치안 관련 치안수요의 증가로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짐과 외국인 범죄 사건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983년부터 외국어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21개 어권 216명이 근무하고 있다.⁵⁷⁾

특히, 2006년 중국출신 귀화자 1명을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말 기준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능통한 총 14명의 귀화자를 특별채용하였다.⁵⁸⁾

특별 경찰관으로 채용한 귀화자들은 동일인종 밀집지역에 근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양국가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 언어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첩보·정보수집의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자국민 피의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어, 외교적인 마찰이나 인권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57) 경찰청, 위의 책, 325쪽.

58) 2006-2007년 중국인 1명, 2008년 필리핀·인도네시아인 2명, 2009년 중국인 1명, 2010년 중국인 3명, 2011년 중국인 2명, 캄보디아인 1명, 2012년 중국인·베트남인 2명, 2013년 베트남인 1명이다. 경찰청, 위의 책, 325쪽.

59) 김윤영, 앞의 논문, 84쪽.

2.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교육과 경찰의 엄정 대응

가. 체류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개선 확립

경찰은 체류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기초 법질서 및 제도 교육, 차별화된 범죄예방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법률 무지에 의한 범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방식의 외국인 범죄예방 교실에서 탈피하여 교육 대상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법질서 교육’,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은 ‘기초질서·안전·범죄피해예방교육’,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아동 등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기초법 질서·제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흥기소지, 도박, 보이스 피싱’ 등 「외국인들이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과 ‘가정폭력, 아동 실종·유괴 예방, 성범죄, 사기, 절도’ 등 「생활속 범죄예방 요령」 및 「범죄신고 요령」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3년에 경찰청은 총 7,597회에 걸쳐 219,205명(결혼이주여성 3,709회 79,312명, 외국인 근로자 2,026회 64,315명, 유학생 478회 27,713명, 다문화가정자녀 629회, 13,739명, 기타 755회 34,126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범죄예방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⁶⁰⁾

물론 경찰청과 더불어 법무부의 동포교육 30,890명, 고용부의 취업교육 53,296명을 합치면, 2013년 교육 총인원은 313,859명이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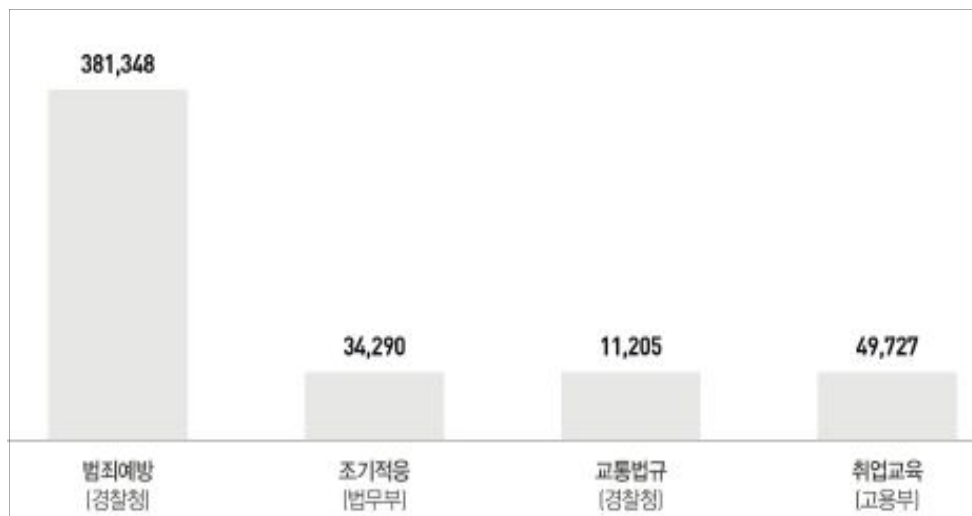
60) 경찰청, 앞의 책, 326-327쪽

6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4, 23쪽

2014년에도 체류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역량 강화 측면에서라도 범죄예방교실의 운영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기초 범질서·제도 교육 (2014)

(단위:명, 교육총인원:476,570명)



* 출처 : 2015 중앙행정기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26쪽.

또한 범죄예방 교실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고려, 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시에 통역인을 참여시키는 등 중요 교재내용 번역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여, 외국어 특채경찰관(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강사로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경찰서 내 외국어 능통 경찰관 및 강사 희망자를 선정하고, 교육생 직업·국가 등을 고려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회성 운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범죄예방 교실 시간의 추가 배정으로 운영하여 상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체류 외국인의 범죄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 강도, 강

간과 추행, 상해와 폭행 등 강력범죄들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9,312명, 교통사범도 8,147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의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경찰청은 2014년 범죄예방을 위하여 38만명을 교육시켰으며, 1만1여명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였다.⁶²⁾

특히, 이러한 기초법 질서 교육과 동시에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실시하여 기초 법질서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폭력 등의 체류 외국인 범법자도 적극적으로 검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국내 기초법질서·제도의 교육은 외국인 밀집지역내에서 기초질서위반 행위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고, 더불어 이로 인한 외국인 밀집지역내에서의 주민 불안이 어느 정도는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찰은 기초법질서 및 교육 뿐 아니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인 치안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 요소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중심의 경찰 치안 강화 전개

앞서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되고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한 잔인·흉악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반(反)다문화 정서의

62) 2013년도에도 교육을 받은 총인원은 313,859명으로 기초 법질서·제도 교육을 위해 경찰청은 범죄예방을 위해 219,205명(70%)을 교육시켰으며, 교통법규 교육도 10,468명(3%)을 교육시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중앙행정기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4. 23쪽.

심각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치안은 더욱 불안하고,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구로의 가리봉동, 영등포의 대림동, 용산 이태원동, 경기도 안산 원곡동, 시흥 정왕동, 수원 매산동, 부산 장림동, 대구 삼덕동, 인천 석남동 등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어 법집행의 사각지대화 할 우려가 높아 경찰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뿐 아니라 치안안전구역에 대한 순찰의 강화 등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42개 외국인 밀집지역과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범죄율 등을 고려한 9개소의 치안안전구역을 선정하고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및 치안봉사단 활용, 범죄예방교육, 운전면허교실,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등 다양한 범죄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은 지역치안 확립을 위한 외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단 2,298명을 참가시키고 있는데, 57개 경찰서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1,064명과 86개 경찰서에 치안봉사대 1,234명을 참가시키고 있다.⁶³⁾

하지만, 1천여 명에 불과한 외사경찰관만으로는 다양한 외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⁶⁴⁾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전담인력과 조직을 우선 충원해야 할 것이며,⁶⁵⁾ 더불어 외사 경찰의 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 계획 자료, 17쪽 참조.

64) 2014년 9월 현재 전국 외사경찰 정원은 1,102명에 불과하다.

65) 정보경,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한 치안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11, 68쪽.

〈표 17〉 등록외국인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구 분	‘가’급 밀집지역	‘나’급 밀집지역
기 준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7,0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4% 이상인 지역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
현 황	49개 경찰서	62개 경찰서

* 출처 : 경찰청 외사국, 2014

또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중심의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내에 치안안전구역을 세밀하게 지정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관련 가정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불량식품 범죄 등 4대 사회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범죄와 여권의 위·변조, 해외 성매매, 국제 결혼 사기범죄 등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집중단속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중심의 경찰 치안 강화 전개에 대한 일환으로 경찰청은 2015년 11월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⁶⁶⁾

특히,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內)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잔존하는 치안 불안요소 제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체류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강·폭력사범의 단속」을 상반기(2. 16. ~ 5. 26.)·하반기(9. 1. ~ 10. 31.)을 추진하였다.⁶⁷⁾

66) 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15년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 2015. 11. 5 보도자료 참고.

67) 2015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강·폭력사범 총 698명 검거하여 92명을 구속시켰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패거리폭력배·강폭력·마약성폭력·도박 등 총 708명을 검거하고 93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15년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 2015. 11. 5 보도자료 참고.

〈표 18〉 2015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사범의 단속 결과

구분	총계	외국인 패거리폭력배	강·폭력	마약	성폭력	도박· 대포통장 등
검거	353건 / 708명	12건 / 70명	109건 / 194명	38건 / 61명	11건 / 12명	183건 / 371명
구속	93명	11명	21명	30명	4명	27명

※ 출처 : 경찰청, 2015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단속」 결과, 2015. 11. 보도자료 참고.

2015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외국인 도박개장 및 환치기·사기전화에 이용되는 명의도용통장 등 사범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하반기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는 평소 공단 등에서 일 하다가 본국 출신 선후배나 친구들끼리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어울려 다니며 폭처법이 규정한 범죄를 범한 자들로 이들은 대개 고향친구, 직장동료 사이로 사소한 시비·이성문제가 집단폭력 등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12건, 70명). 상반기(51건, 280명)에는 단속된 외국인 패거리폭력배 중 62명이 강제퇴거·자진출국 하는 등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어 단속인원은 감소하였고, 조직체계를 갖춘 외국인 폭력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폭력 범죄는 주로 외국인 지역사회내 식당·유흥가 등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주취폭력 및 상해사건이 92건(86%)을 차지하였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강취 목적의 강도 및 자국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도 일부 적발되었다.

마약 사범은 38건 61명을 검거하였는데,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대마가 28건(74%)으로 대부분이었고, 야마·엑시터시 순이었으며, 범행수법으로는 단순 투약이 21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유통·판매가 10건(26%), 대마 재배 및 혼합 제조 등 마약류 제조 사범도 8% 이었다.

또한, 도박 및 명의도용통장 등 사범은 183건 371명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등 범죄 원인을 제공하는 도박장 개장 및 알선 사범을 단속하였고, 도박자금의 유통 경로이자, 환치기·사기 전화 등 외국인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통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내국인 총책 및 모집책 등 다수를 검거하였다.⁶⁸⁾

이처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치안 강화 전개는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 감소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강·폭력사범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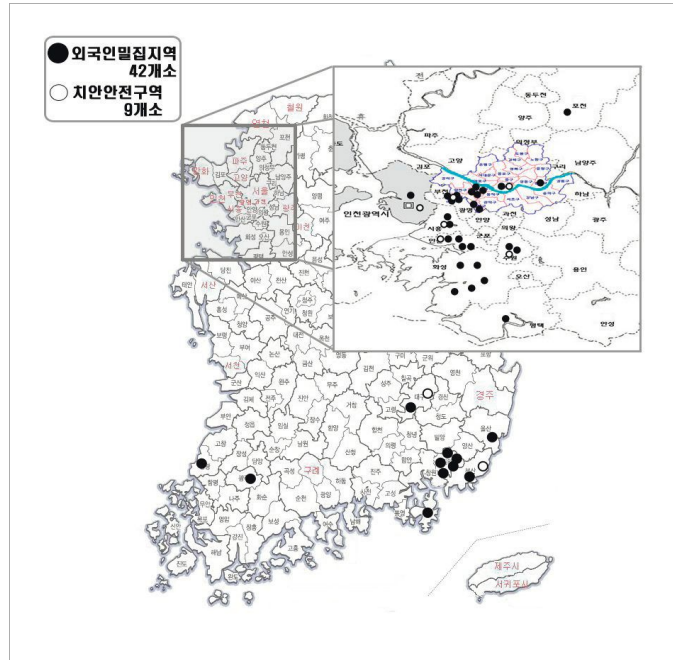
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대응 시스템 확립

국민과 체류 외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및 법질서가 존중되는 체류 외국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과 치안안전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범죄 대응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2015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가 1,000여명 이상이고,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20%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인 읍·면·동으로 현재 전국에 42개가 있다.

68) 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15년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 2015. 11. 5 보도자료 참고.

<그림 5> 외국인 밀집지역 · 치안안전구역



※ 출처: 법무부경찰청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에 12개소,⁶⁹⁾ 인천·경기지역에 19개소,⁷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8개소,⁷¹⁾ 대구지역에 1개소(논공읍), 광주·전남 지역에 2개소(평동, 삼호읍)로 총 42개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치안안전구역은 전국 42개의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밀집도 및 범죄율 등을 고려한 5개 지방경찰청 내의 9개소를 지정하고 있다.⁷²⁾

69) 서울지역은 가리봉동, 구로2·4·5동, 자양4동, 가산동, 독산3동, 이태원1동, 대림 1·2·3, 신길 5동 12개소이다.

70) 인천·경기 지역은 논현고잔동, 대곶면, 월곶면,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2동, 초지동, 정왕본동, 정왕1동, 세류1동, 고등동, 매산동, 마도면, 양감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읍, 서탄면, 가산면 19개소이다.

71)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녹산동, 옥포1동, 온산읍, 주촌면, 상동면,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 8개소이다.

우선 외국인 밀집지역과 치안안전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범죄 대응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에 외국인 영문 성명을 병기토록하고, 또한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의 출국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조직 범죄 등 중요 외국인범죄 전담대응팀의 운영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또는 치안안전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라.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외국인 밀집지역내에 체류외국인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로 인해 체류외국인들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강력·폭력사범 100일 집중 단속」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패거리 폭력배 등 외국인 강력·폭력사범 698여명을 검거하여 92명을 구속시키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강력, 폭력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엄정하게 대응을 하였다.⁷³⁾

또한 경찰청 외사국은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11개 지방경찰청

72) 9개의 치안안전구역은 구로 가리봉동, 영등포 대림동, 용산 이태원동, 부산 장림동, 대구 삼덕동, 인천 석남동, 수원 매산동, 시흥 정왕동, 안산 원곡동이다.

73) 주요 검거 사례로 경남지방경찰청은 타 지역 자국민들과 각목 등으로 상호 집단폭력을 행사한 캄보디아인 21명을 검거하고,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백개 유통법인을 설립 한 후, 8,20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대포통장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하여 82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범죄자 29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과 23개 지역,⁷⁴⁾ 특히 체류 외국인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범죄수사대를 통한 현장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 및 공권력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원의 중국교포 박춘풍 사건과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강력 및 폭력 범죄 사건들과 체류외국인에 의한 경찰 공권력의 무시 현상, 풍조 등으로 인한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하여 순찰과 불심검문, 112신고에 따른 공동대응, 생활주변의 작은 불법 및 무질서 행위도 강력하게 제재하는 강력한 범죄 예방 활동의 전개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외국인이 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간주하여 더욱 엄정하고 강력하게 공무 집행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회성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류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추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찰 공권력에 도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74) 지방경찰청은 서울(영등포 대림동, 구로 가리봉동, 광진 화양동), 부산(사하구, 장림동, 사상 쾌법동), 대구(서구 비상동, 성서 이곡동, 달성 공단동), 인천(서구 석남동), 울산(울주 원산읍), 경기(안산 단원 원곡동, 시흥 정왕동), 충북(음성 금왕동, 진천 진천읍), 전남(영암 삼호읍), 경북(경주 외동, 경산 진량읍, 구미·칠곡 산업단지), 경남(김해 서부중부), 거제 장승포, 제주지방경찰청(서부 연동, 서귀포 성산읍)이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3. 경찰의 전담 검거 강화와 단속 협력 구축

가. 외국인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전담 활동 강화

국제화·개방화로 인해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성 범죄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첩보수집·분석·DB구축·추적검거까지 통합적인 전문적 수사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찰 가용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도박, 마약, 집단폭력 등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의 구로, 영등포, 이태원, 경기 안산단원 등의 외국인 밀집지역⁷⁵⁾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외국인 폭력배의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야쿠자·중국 흑사회 등 해외 범죄조직이 대부업·건설업·부동산업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에 진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외국인 집단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외국인 폭력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같은 행동강령이나 위계서열을 갖추지 못한 단계이며, 이들이 주로 보이는 범죄경향은 자국내 동일지역 출신끼리 결집하여 자국민 운영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

75)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성향에 따라 ‘외국인 집단거주지’, ‘외국인 마을’, ‘외국인 집단촌’, ‘외국인 거주지역’, ‘외국인 과밀지역’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생활공간과 관련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다.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0, 19-20쪽.

로 갈취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대부한 후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갈취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보복우려 및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높은 강력사건 발생빈도와 언론의 관심을 고려하여 전담 국제범죄수사대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범죄 수사대에 국가별 외국어 능통자를 외사특채자로 배치하여 국적별 외국인 폭력배 전문 수사요원으로 양성·활용해야 할 것이다.⁷⁶⁾

나. 체류외국인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단속 협력 구축

체류 외국인에 관한 범죄는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검찰, 국민안전처, 법원, 고용부, 관세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사이에 업무상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에 관한 범죄는 부처간의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15. 10. 14 경기도 평택 우체국에서 현금을 강탈한 특수강도 혐의의 불법체류자 태국인,⁷⁷⁾ 2015. 4 아내를 토막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하일도 불법체류자이고,⁷⁸⁾ 수원에서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준풍도 불법체류자이다.⁷⁹⁾

최근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자격을 위반한

76)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10. 309-310쪽.

77)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90730_14782.html(2015. 10. 20 검색).

7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046&md=20151019003318_BL(2015. 10. 20. 검색).

7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4/20150714005192.html?OutUrl=naver>(2015. 10. 20. 검색).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행 역시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날로 잔혹하고 흉포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앞에서도 총 체류외국인의 실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015년 8월 기준 182만명의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12,596명으로 1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더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의 강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력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출입국사무소 등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정부 직원은 총 150명이다. 2015년 8월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숫자가 21만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직원 1명이 무려 1400명의 불법체류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마저도 150명 직원이 불법체류 단속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 위반사범 처리, 실태조사, 외국인 보호업무 등 다양한 일을 겸직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여 출국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유흥업소 등 제한된 장소만 단속하는 등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검거에 저항하여 불법체류자들이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거나, 고층 건물에서의 자살소동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적 문제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한국과 대비되고 있는데, 우선 단속 직원 1인당 관리하는 불법체류자가 7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을 확충했고, 여기에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

지문 채취를 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도 적용한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벌금도 기존 20만엔에서 10배 이상 올렸다. 동경(東京)만 해도 외국인범죄·조직범죄 전담수사 확보 인력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서도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⁸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면, 불법체류자의 범죄를 예방을 위한 단속 인원의 부족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청을 비롯한 법무부·고용부·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출입국관리소의 업무인 불법체류자 검거에 따른 인원 부족은 경찰청과의 충분한 검토로 이에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검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들의 정부합동단속반 등을 편성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불법 외국인을 적발하고,⁸¹⁾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의 단속하고,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자 및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의 단속이 아닌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체류 외국인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만료 외국인의 출국 기피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 인원의 부족도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80)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외국인범죄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상·범죄경력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망을 피해갈 확률이 높고, 불법체류자라면 더 그렇다”며 “이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대책과 더불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046&md=20151019003318_BL (2015. 10. 22 검색).

81) 2014년 기준, 18,443명의 범법 외국인을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실시는 체류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찰과 법무부간의 출입국 외국인의 지문정보의 공유를 통해 체류외국인 범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와는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준법교육의 실시하여 입국단계부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또한 체류 외국인의 가정폭력 문제도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과 불법·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의 실현⁸²⁾ 등 정부부처간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4. 맞춤형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2015년 경찰은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치안 시책의 일환으로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폭력, 흥기소지, 도박 및 도박개장 등 체류 외국인이 모르면 위반하기 쉬운 범죄유형과 범죄신고 요령, 도움 요청 방법, 운전면허 교실, 범죄예방교실 안내,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 외국인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동 활용 홍보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맞춤형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도움센터, NGO 단체

8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업무는 국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외국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 제공 등 중개업체의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실질적 적발, 단속,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관리 및 감독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기준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250쪽.

등 외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홍보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 등 다문화 치안활동시에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고용센터 등과 협조하여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신고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주·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공동 캠페인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불법체류자는 20만명을 넘어 체류외국인 대비 12% 가까이에 왔다.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청을 비롯한 법무부·고용부·검찰청 등 국가기관들은 긴밀히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외국인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내국인들과 민간단체, 외국인 지원단체 등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고, 경찰은 이들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범죄 홍보는 인종차별문제, 외교적 마찰 문제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⁸³⁾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외국인들을 우리사회 어떻게 정착시켜야할 것인가에 대한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로 인한 슬럼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외국인들이 자행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의 실상과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위에 놓고, 이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현장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을 설득해야할 것이다.⁸⁴⁾

83) 김윤영, 앞의 논문, 94쪽.

5. 불법체류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밀입국 방지 대책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외국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⁸⁵⁾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밀입국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무부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출입국심사를 위한 첨단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의 입국시 지문·얼굴 정보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인명의 여권을 행사한 신분 세탁 외국인을 적발하고 있다.⁸⁶⁾

이 지문·얼굴 정보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3년에는 여권 위·변조 사범 3,728명, 2014년에는 3,526명을 적발하였다.⁸⁷⁾

또한 경찰청과 함께 유기적인 밀입국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단이탈자 및 미귀선자 발생 시 경찰청과 사진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⁸⁸⁾ 또한 국민안전처는 제주무사증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상 밀출입국 종합 방지 대책’을 시행하여,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출국자 등 105명을 검거하였다.⁸⁹⁾

그리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 정보공유의 강화로 2015년에는 경찰청

84) 김윤영, 앞의 논문, 93쪽.

85) 2014년에는 불법취업 업단 등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사전제도 및 안내문을 10,217개 업체에 배포하여 25,648명을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체류자 등 18,443명의 범법외국인을 적발하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6,181명을 단속하였다. 법무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176쪽.

86) 이 지문·얼굴 정보 확인시스템 제도는 2012.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 정보를 통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단 17세 미만 연소자와 외교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지문이나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송진원, 테러용의자 등 입국 사전차단 목적, 연합뉴스, 2011. 12. 26일자.

8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23쪽.

8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위의 보고서, 315쪽.

8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위의 보고서, 23쪽.

과 법무부간 입국 및 외국인 등록시 수집한 외국인 지문·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외국인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⁹⁰⁾

2014년의 경우에는 밀입국 방지를 위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10,229 척에 설치하고, 연안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및 항만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내 설치된 CCTV를 공유하고,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증발급시 국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검색기능 제고 및 출입국심사와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책들로 불법체류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이러한 대책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체류외국인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의 유입 차단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따라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조직의 연계를 통한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진출 유흥업소 관리·도박장 운영·마약밀·성매매·환치기·여권밀매 등 조직적 범죄행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사범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 간 경찰협력 회의시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 19일 「경찰, 창경 70주년」을 기념하여 경찰청은 경찰 최초로 인터폴의 사무차장과 18개의 치안협력 국가의 경찰청장을 비롯한 외국 경찰의 고위인사들을 대한민국 경찰청장

9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위의 보고서, 22-23쪽.

이 초청하여「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⁹¹⁾

특히, 중국 및 태국, 캄보디아 등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최근의 보이 스피싱 범죄 등 사기전화 전화상담실의 소재지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와는 수사공조 및 범죄인 송환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통한 범죄조직의 유입 차단 등을 협의 하였다.

또한 최근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에 진출하여 대부업, 건설·부동산업, 농수산물 수출입업, 결혼중개업 등 합법적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내 활동 외국업체 중 해외 범죄조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국내법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해외의 외국인 범죄조직과 국내 체류 외국인과의 범죄 연결성 및 마약 등의 유입을 미연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7. 실효성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관리

불법체류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여러 정책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불법적인 고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 불법고용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사증발급의 제한 업체가 아닌 외국인 고용 모범업체들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체들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증을 발급해 주고, 체류 심사, 체류기간의

91) 경찰청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18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내무장관과 중국 공안부 부부장, 베트남 공안부 수석차관 등 치안관계 장·차관급과 과테말라, 파푸아뉴기니, 몽골 경찰청장 등 고위급 경찰인사, 인터폴 사무차장 등 총 71명의 외국 경찰관이 참가하였다. 참가국 현황으로는 청장급(10) : 우즈베크(장관), 중국(부부장), 베트남(수석차관), 인니(차관), 과테말라, 몽골, 아랍에미리트(UAE), 파푸아뉴기니(PNG), 튀니지, 스리랑카(청장 내정자), 차장급(5) : 요르단,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인터폴(사무차장), 국장급(3) : 일본, 카타르, 태국 등이다. 경찰청, 18개 치안 협력국가 경찰청장 초청 「국제 경찰청장 협력회의」개최, 2015. 10. 19 보도자료 참조.

상한 부여 등의 편의 제공을 하여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외국인 고용에 있어 미지정의 기업들은 정부에서 실태조사 및 단속 등을 강화하여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범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개정을 통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의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출입조사권’ 신설 등⁹²⁾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⁹³⁾

또한 외국인등록증 불법 제공자나 각종 허가 신청 관련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외국인등록증 불법제공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뿐 아니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을 신설하고, 각종 허가 신청 관련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하여는 법률을 개정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강제퇴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허위초청이나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범죄 등에 대한 전담 수사조직인 이민특수조사대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가 설치하였다.⁹⁴⁾

92) 200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위한 주거 등 건조물의 강제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도7156 판결

93) 법무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불법체류자 1인당 세금 및 4대 보험 연간 탈루액이 평균 1,947,120원이라 한다.

94)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43쪽.

8. 불법체류자의 차적 조회를 통한 범죄 예방

최근 체류기관을 도과한 불법체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 체류 및 출입국기록,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등록 현황,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9. 12부터 2015. 3월까지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160,554대 중 본인 소유로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는 총 83,657대로 자동차 등록 이후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15년 3월 말 현재 출국한 기록이 없는 외국인이 총 2,074명이고, 해당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는 2,232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⁵⁾

<표 19> 자동차 등록 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 관련 현황

자동차 등록 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	등록 자동차 현황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2,074명	2,232대	1,374대	1,381대
			과태료 체납액 435,079,300원

*출처: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제출자료, 2015 재구성.

더욱이 2015. 3 기준, 2,232대 중 1,374대(61.5%)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⁹⁶⁾ 실제로 일부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95)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2015. 9, 30-32쪽.

96)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1,374대의 명의자인 불법체류자는 총 1,268명이다.

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한 뺑소니 범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⁷⁾

또한 위 2,232대 중 1,381대(61.8%)는 과속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과태료 총 4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로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범죄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⁹⁸⁾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불법체류자의 자동차 책임보험 등의 미가입 차량의 보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에 대한 우선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토교통부, 출입국관리소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체류자의 차적 조회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범죄 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97) 위 도표의 차량들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11대의 경우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차량으로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 주었는데(총보상금액 117,109,390원), 이 정부보장사업이란 것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사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외국인(A)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된 이후 2012. 9. 12.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출국하지 않고 국내 체류하던 중, 위 차량이 2014. 3. 30.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행자가 도주하여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1억원을 보상 받았다. 감사원, 앞의 보고서, 32쪽.

98) 감사원, 앞의 보고서, 33쪽.

V. 결 론

세계화, 개방화, 급격한 인구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추세에 따라서 국제 이주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3년 UN보고서는 세계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2억 3천만여 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인구가 급증하였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8년 후 2015년 8월 기준으로 182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한국도 다인종에 의한 다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추행, 폭행, 상해 등의 강력범죄, 사기범죄, 교통 범죄, 불법체류자 범죄와 이들의 단속 및 관리, 체류 외국인의 국적취득·상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잔혹하고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된 범죄들은 그 수법이 교묘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그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외국인 범죄 수사 전담 경찰관의 부족, 외국인 수사에 따른 언어소통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 외국인 혐오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러한 문제점이 상존하더라도 경찰은 외국인 집중지역, 빈도가 높은 범죄 발생지역 등을 치안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치안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말·심야시간 등 치안 취약시간대 및 취약장소에 국제범죄수사대, 지역 경찰관들에 의한 현장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5년에도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총 698명 검거)·하반기(총 708명 검거)로 나누어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을 하였다.

또한 형사활동 강화 내용으로 위력순찰 및 불심검문, 112신고의 공동 대응, 생활주변의 작은 불법 및 무질서 행위 엄단을 통해 공권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체류 외국인의 다수 거주지역에 대한 동향 조사를 시작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범죄수사대 등 경찰의 연중 순찰 강화 활동,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한 정당한 법집행, 맞춤형 외국인 범죄 예방의 홍보활동과 불법체류자에 의한 밀입국 방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대응시스템의 재정립, 체류 외국인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의 유입 차단,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단속 협력의 구축, 실효성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의 추진, 외국인 우범자의 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 CCTV 확대 설치, CPTED를 활용한 범죄 예방 등을 하나씩 차분히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선정 기준의 마련과 밀집지역의 재지정과 체류 외국인의 정보파악 및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고도화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관리 정보가 시스템에 표출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밀집지역의 집중적인 관리·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하며, 권익도 보장 받아야 한다. 이들도 자국민에 의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다.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들도 우리 사회와 문화에 건전하게 동화될 수 있도록 치안 환경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체류 외국인 범죄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2016년 이후에도 한류의 열풍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체류 외국인은 증가할 것이다. 범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류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러나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인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시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정적인 외사치안 질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범죄 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감소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국민들의 비롯한 모두 기능에서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특히, 체류외국인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감사원,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5. 9.
-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3.
-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단기과제), 2007.
- 김윤영, 국내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확보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2.
- 김윤영,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 김창석, ‘불법체류외국인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불법체류자 처리대책 Workshop 자료집, 2013 6.
- 김태명,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4.
- 국무조정실,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에 외국인 범죄 예방 한다’, 2015. 2. 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중앙행정기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 법무부, 2014년 출입국자 6,0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1. 26.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9.
- 김두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 김민배·김경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조선대 법학논총, 2001.
- 김원희, “한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0.2.
- 김이선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한국사회학, 2008, 36-71면.
-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김홍매,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희균·최희경, “선진국의 외국인범죄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0.
- 박광민,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 연구”, 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 2010.
- 박기륜, “외국인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4호, 2007.
-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0.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제23집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3.
- 성보경,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근절을 위한 치안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11.
- 오영신, “영국의 외국인 범죄현황 및 대처에 관한 연구”, 2011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집(제26집), 2011.
- 오병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의 인권실태와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처방안”,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

- 이갑호, 해외현장기획보고: 선진국 사례로 본 국내의 외국인 집거지 관리·활용방안, 국가정보원, 2007.
- 이병문, “외국인범죄 증가에 따른 외사경찰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석사논문, 2012, 2.
-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2호, 2008.
- 이진영,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 정경선, “외국 경찰의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정책 연구”, 경찰청 국외훈련 보고서, 2010.
- 정광현, “외국인범죄 치안대책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석사논문, 2010.
- 정대권,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 대응방안-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10.
- 한기수,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주거환경 선호요인 분석”,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11.6.

II. 판례 및 경찰 자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4, 2015. 5. 28.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 1221 판결.
- 대법원, 2008도7156 판결.
- 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15년 하반기 「외국인 강·폭력범죄 등 집중단속」 결과, 2015. 11. 5.
- 경찰청 외사국,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분석과 결과”, 2014.
- 경찰청 외사국, 각국의 체류외국인 관리실태, 2007.

-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 동경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에 관한 日경찰자료보고”, 2007.8.8.
- 동경주재관, “일본경찰의 통역인 사용실태”, 경찰청, 2012.2.14.
-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 2011.1
- 안산단원경찰서, “-현장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보호 및 범죄 예방·수사 매뉴얼”,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 2011.8.
- 안산단원경찰서,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수사 매뉴얼, 2011.
- 요코하마 주재관, “日, 新 외국인 체류관리제 도입 동향”, 경찰청, 2012.2.16.
- 요코하마 주재관, “주재국 치안자료 수정 보고-일본 외사경찰 직제관련”, 경찰청, 2010.12.2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4년 3월호]”, 2014.

Ⅲ. 기타

- 2015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5. 6.
- 김기환, ‘우위안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012. 10. 19. 국무조정실,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에 외국인 범죄 예방 한다’, 2015. 2. 5.
- 나연준, ‘수원 토막살인 사건, 경찰 탐문 조사 제대로 했어도 참극 막았을 수도...’, NEW1, 2012. 4. 6.
- 일요서울, ‘수원 토막 사건, 경찰 늦장 대응 논란 속 경찰 사과문 발표’, 2012. 4. 6.
- 송진원, 테러용의자 등 입국 사전차단 목적, 연합뉴스, 2011. 12. 26.
- 이상원, ‘오원춘, 훼손 시신 일부 타인에 제공하려...’, 문화일보, 2012. 6.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09635&cid=43667&categoryId=43667> (2015. 10. 28 검색).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90730_14782.html(2015. 10 20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046&md=20151019003318_BL (2015. 10. 20. 검색).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4/20150714005192.html?OutUrl=naver> (2015. 10. 20.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8000046&md=20151019003318_BL (2015. 10. 22 검색).

책임연구보고서 2015-09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경찰의 대응 방안

2016년 9월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